



안전인증서 Safety Certificate

안전인증번호: HA020033-23049A
(Application No.)

제조업자/수입업자명: 건흥전기(주)
(Manufacturer/importer)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183 (장안동)
(Address)

제품명: 전기기기용 스위치(레바 스위치)
(Product)

기본모델명: KH-8010RP
(Basic Model)

파생모델명 (Series Model):
KH-9011, KH-9011-1, KH-9111

정격/안전기준상의 모델구분: 10A 380V 1E5
(Rating)

시험기준: K 61058-1(2007-12)
(Standard)

본 인증서는 제조국명: 대한민국
제조업자명: 건흥전기(주)

제조공장의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183 (장안동)

의 제품에만 해당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4항, 제10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We issue this Safety Certificate for the above applianc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2), 9(4), 10(2) or 15(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2023년 10월 23일
(Year) (Month) (Day)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orea Testing Certification Institute



※ 이 인증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한정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추가로 인증·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첨부서류

-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부품 및 재질목록(List of Critical Components)
- 기본모델·파생모델의 내용(Description of the basic and series model)
- 안전인증의 변경 현황(Revisions Status)

안전인증을 받은 자의 유의 사항 Notification for Recipients

1. 본 증명서는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적용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This certificate is valid only when the product meets the safety standards and is produced from the manufacturing factory that states on this certificate.)

2. 안전인증 마크는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자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광고, 카탈로그 등에 사용하면 인증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Cessation or cancellation of the certification may occur if the actual meaning of the Safety Certification Mark is misled to the public by false advertisement on a catalog of the product.)

3.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 변경 신청을 하여 안전인증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In case of the following events, the Safety Certificate shall be reapplied and reissued for revision)

- 1) 제조자, 대표자, 주소 등 인증서 기재내용의 변경

(Revisions in contents of the certificate such as manufacturer representative, address and etc.)

- 2) 파생모델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 (Additions, changes, or removals of series model)

- 3) 안전관리 부품의 변경 또는 추가

(Additions or changes in components which are listed on the certificate)

4.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Recipients of the Safety Certificate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s.)

- 1) 안전인증 표시 등 인증요건의 유지관리

(Maintaining and preserving the Mark and other certification requirements)

- * 안전인증을 받기 이전 또는 정지, 취소된 이후 생산된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를 하면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It will be punished by the law if the certification mark is used before the issue (or after suspension or cancellation) of the certification.)

- 2) 자체 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 (Self-testing and record keeping)

- *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

(Recipients of the Safety Certificate shall conduct products inspection strictly for products to comply with the safety standards)

5. 안전인증을 받을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7조에 따라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Recipients of the Safety Certificate shall require to inspect once in two years according to the Article 7 section of the the Electrical Appliances and Consumer Products Safety Control Act.)

6. 인증서(증명서)에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 1) 문서관리번호 (문서관리번호 노출시 CS홈페이지를 통해 기술문서 내용이 조회 가능함으로 사본 등 제출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시점확인필

- 3) 2D바코드

안전인증시의 조건: 동 제품의 생산 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인증 시 등록된 부품누락 및 임의 변경하지 말 것.
Conditions of Certification : In the production of this product, conduct a self-test and do not miss and change the registered components.

